

# 2019년도 제2차 공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제2차 공군 6급 이하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0.

공군참모총장

## 1.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가. 총 선발예정인원 : 123명

나.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인원		선발 예정 인원	근무 예정 지역	응시자격	시험 과목 <small>* '한국사' 및 '영어'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small>
직렬	계급				
행정	9급	15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9급	11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수	9급	2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9급	9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사정보	9급	14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9급	4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전자	9급	5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9급	8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통신	9급	2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9급	3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직급/인원		선발 예정 인원	근무 예정 지역	응시자격	시험 과목 * '한국사' 및 '영어'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렬	계급				
전산	9급	3	전국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9급	1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기계	9급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학법
물리분석	9급	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유도무기	9급	10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9급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기체	9급	9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9급	3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항공기관	9급	7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9급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항공보기	9급	2	전국	•[장애인 구분모집]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지원	9급	4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기상	7급	2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기상예보	9급	1	전국	•자격 제한 없음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 응시자격에 제시된 자격증 소지자 및 가산 자격/면허증은 해당직렬 “붙임 1”의 자격증을 확인 바랍니다.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19. 12. 20.\)](#)까지 취득(최종합격) 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가. 시험방법 : 1차(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 1) 원서접수 : 전국 **7개 지역 중** 응시자가 필기시험 응시에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지원

\* **필기시험 응시지구(7개) : 서울(성남), 경기(수원), 강원(원주), 충북(청주), 대구, 부산, 광주**

※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2) 필기시험 :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 실시

가) 필기시험 과목 : 7급(6과목), 9급(5과목)

\*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으로,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

나)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다)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라)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130%) 범위 내(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 3)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군본부에서 통합하여 실시

- 평가요소

- |                  |                    |
|------------------|--------------------|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나. 최종합격자 결정

- 1) 1차시험(필기시험), 2차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자 결정
- 2)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확정

# 3. 응 시 자 격

## 가. 필수자격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20. 2. 7.)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 1) 채용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채용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9. 10. 16.)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 등급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9. 10. 16.)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 외의 다른 직급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응시 할 수 없음)

## 라. 응시연령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이상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8급 이하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4. 채용시험 일정 등

### 가.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19. 10. 11.(금) ~ 10. 16.(수) * 09:00~21:00(토, 일 제외) 단, 10. 16.(수)은 18:00 마감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불일치자 공고	'19. 11. 11.(월)
필기시험	'19. 12. 21.(토) * 시험시간/장소 공고: '19. 12. 6.(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 1. 10.(금) *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20. 1. 10.(금) ~ 1. 14.(화)
면접시험	'20. 2. 5.(수) ~ 2. 7.(금) * 직급별 면접일정 공고 : '20. 1. 21.(화)
최종합격자 발표	'20. 2. 18.(화) * 임용예정일 : '20. 3. 1. 이후

### 나. 유의사항

- 1)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 ([www.airforce.mil.kr](http://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 2)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19. 10. 11.(금) ~ 10. 16.(수) / 4일간(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가능)  
[단, 10. 16.(수)은 18:00에 마감]

###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 『지원서 작성⇒ 군무원』에 접속하여 지원

\* 원서접수는 아래 PC 환경에서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그 외 환경에서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ndow XP SP3(서비스팩3) / Window 7 - 인터넷익스플로러 8 버전  
[익스플로러 상위 버전 PC인 경우 환경설정 하는 방법은 공군모집 공지사항에 공지]

2)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반드시 필요

\*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 미만

3)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 비용이 소요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원서접수 시 선 결재 후, 사실관계 확인(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후 환불조치

### 라.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9. 10. 17.(목) 09:00 ~ 10. 18.(금) 18:00 / 2일간

2) 취소방법 : 『공군홈페이지』 ⇒ 『지원서 작성』 ⇒ 『지원확인/수정』  
⇒ 『군무원』에 접속하여 지원취소

3)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계좌이체수수료 제외)

###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에는 원서접수 취소처리 후 접수사항(응시직렬, 지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원서접수 기간 종료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계좌로 전형료 결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타은행 이용 권장

- 4) 원서접수 종료일 임박 시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기 바랍니다.

**바. 응시번호 확인 및 응시표 출력** : '19. 10. 21.(월) 13:00부터 가능

### **사.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 1)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신청기간/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2”를 참고바랍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에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2”를 참고하여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응시 구비서류 제출**

### **가. 제출대상**

- 1)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2) 의사상자 등 : 해당 대상자 증명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3)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나. 제출기간** : '19. 10. 21.(월) ~ 10. 23.(수)

[19. 10. 23.(수) 우체국(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 “**붙임 3**”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번호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라.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청각장애인 중증(장애정도가 심한자/구 2·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시험실시기관에 별도로 확인을 실시하니, 해당시험 성적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원서접수 시 입력한 시험성적 및 실시일 등이 시험실시기관 확인결과와 불일치하는 경우 대상자 명단을 '19. 11. 1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해당시험 성적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7.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 1)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

시험의 종류		계 급		
		5급	7급	9급
토익 (TOEIC)	기준점수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인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구 2·3급)	350점 이상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플 (TOEFL)	기준점수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인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구 2·3급)	PBT 352점 이상 CBT 131점 이상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펠트 (PELT)	기준점수	PELTmain 303점 이상	PELTmain 224점 이상	PELTmain 171점 이상
	청각장애인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구 2·3급)	PELTmain 152점 이상	PELTmain 112점 이상	PELTmain 86점 이상
텡스 (TEPS)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인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구 2·3급)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新텡스 (新TEPS)	기준점수	340점 이상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인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구 2·3급)	204점 이상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인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자/구 2·3급)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정도가 심한자/구 2·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정도가 심한자/구 2·3급)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정도가 심한자/구 2·3급)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가) **2017. 1. 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19. 10. 16.)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나) 2017. 1. 1.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1)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 등급		
	5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3급 이상	4급 이상

###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6. 1. 1.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19. 10. 16.)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다. 성적 등 입력방법 (성적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1) 영어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

\* 단,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정도가 심한자/구 2·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19. 10. 23.(수)까지 서류제출 주소(「6. 응시 구비서류제출」 참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사 : 응시원서 접수 시에 **인증등급 및 시험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정확히 표기

3)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사항을 오기입하여 해당시험 시행기관 확인결과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당시험 성적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험일자, 점수,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

4)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불일치자 공고 : 2019. 11. 11.(월) 예정

##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 8. 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li> <li>•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li> <li>• 자격증 가산점(응시 직렬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li> <li>•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가산 특전에서 제외</li> </ul>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응시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 2) 적용범위 :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자격증 소지자 (응시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 1) 적용대상 직렬

기술분야 직군(30개)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합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2) 적용범위 : 6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3)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6·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구체적인 자격증·면허증 종류는 [붙임 1] 참조

##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1) 가산점 적용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됩니다.
- 2) 필기시험 시행 전일('19. 12. 20.)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가산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3) 필기시험 때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4)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9. 취업지원대상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현황 등 수정입력

### 가. 수정입력 사유 및 요령

원서접수 이후 취업지원 대상 자격 또는 가산 자격증·면허증 신규취득 등에 따라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수정입력 기간에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 『지원서 작성 ⇒ 지원확인/수정 ⇒ 군무원』에서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해야 해당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나. 수정입력 기간** : '19. 12. 21.(토) 09:00 ~ '19. 12. 24.(화) 18:00 / 4일간

### 다. 수정입력 항목

- 1) 취업지원대상 등 여부 및 가점비율
- 2)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추가등록자 서류제출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를 등기우편으로 '19. 12. 24.(화)까지 공군본부 제출 [19. 12. 24.(화) 소인분까지 유효]

## 10. 기타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바. 필요한 경우에는 직급별 공개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및 영어능력 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격(면허) 또는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 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사항은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인사과[☎(042)552-1453/1457, (군전화) 920-1453/1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은 평일 업무시간(08:30~11:30, 13:00~17:00)만 가능합니다.

## 11. 추가면접/합격제도 안내

### 가. 추가면접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미달된 인원의 1.3배수 범위(미달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나. 추가합격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직렬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행정		자격증 미적용				
사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군수		자격증 미적용				
군사정보		자격증 미적용				
기술정보		자격증 미적용				
수사		자격증 미적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철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철도토목, 응용지질,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철도토목,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측량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품질시험, 소방, 건축사, 건축전기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 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창호, 거푸집, 금속채형,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설	공조냉동기계, 가스, 기계안전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열관리,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열관리, 산업안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산업안전, 일반기계,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배관, 위험물, 가스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환경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생물분류,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기상, 응용지질, 광해방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조경, 산림, 환경
전기	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생산자동화,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카드, 전자계산기,
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전자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산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지도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영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영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사진, 영상, 항공사진

직렬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	기계, 금형, 항공기체, 철도차량,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소방,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용접, 자동차정비, 배관, 건설기계정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용접,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궤도장비정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치공구설계, 판금제관, 항공,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금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등력기계정비, 영상, 승강기
	금속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표면처리,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주조, 압연, 제선, 제강, 표면처리	금속,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주조, 표면처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축로, 제강, 표면처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물리분석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화학분석	화공, 수질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위험물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원자력	화약류제조,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유도무기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총포	기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화공, 항공안전, 화약류관리	기계가공, 전자기기, 위험물	일반기계,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전자,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탄약	화공, 화약류관리, 항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전차	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직렬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 량	건설기계, 차량, 기계, 철도차량, 용접, 금형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철도운송, 건설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철도운송, 건설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기종기운전, 철도차량정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인 쇄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선 체	조선, 용접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	조선, 용접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선 거	조선		조선	조선	조선	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항 해	1 ~ 2급항해사		3 ~ 4급항해사	5 ~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합정기관	조선, 차량, 1 ~ 2급기관사	자동차정비	조선, 자동차정비, 3 ~ 4급기관사	조선, 자동차정비, 5 ~ 6급기관사		
잠 수				잠수	잠수	
기 체	항공기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2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기관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2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보기	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2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지원	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금속, 항공정비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위험물, 화학분석, 침투비파괴검사,

직렬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 상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기상예보	기상예보, 지질및지반		기상, 응용지질, 기상감정		
약 무	약사				
병 리				임상병리사	
방사선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사	
치 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				의무기록사	
의 공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의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의자-보조기사	
영양관리	식품		식품	영양사,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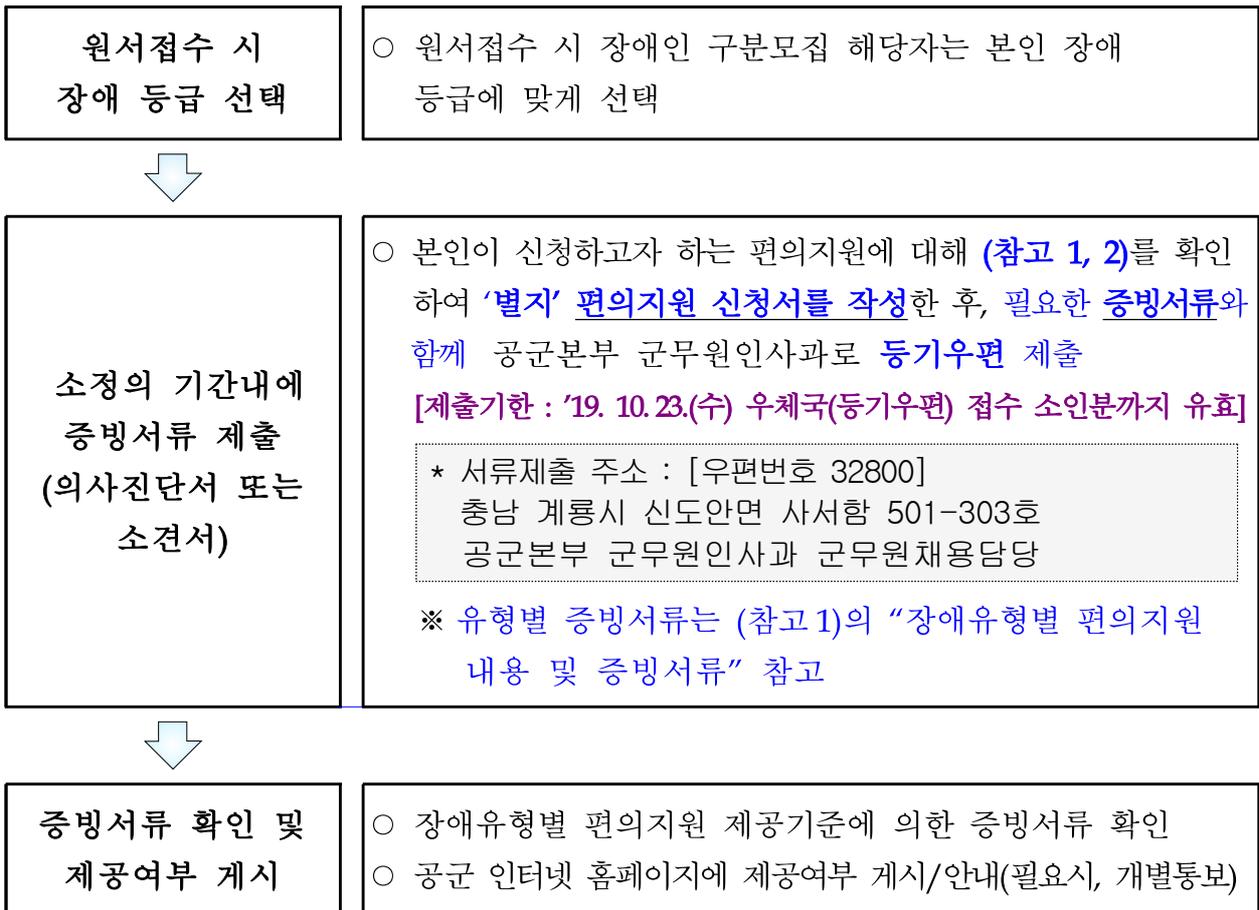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하되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19년도 공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

##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가. 공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나.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가. **(참고 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 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시 신청 바랍니다.

나.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별지'의 편의지원 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다.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 2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확인)

※ 단,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찾기서비스] → [병원 및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라. '18년도 이후 공군본부 주관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 (단, "별지"의 '편의지원 신청서' 는 반드시 제출)

마.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인사과(042-552-1453/1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2019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 유형(등급)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급~3급)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구 4급~6급)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 자 (구 1급~6급)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뇌병변 장애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자(구 1급~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구 4급~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시험시간 연장(1.5배) 답안지 대필	없음 의사 진단서 1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구 4급~6급)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시각 장애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구 1급~2급)	시험시간 연장(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1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구 3급 2호)	시험시간 연장(1.5배)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구 3급 1,2호)	시험시간 연장(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1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구 4급 2호)	시험시간 연장(1.5배)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구 4, 5급 1호)		없음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하) 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 (구 5급2호 6급)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 진단서 1부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 자 (구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검토후안내)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소견서 1부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유형(등급)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1급~6급)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자 (구 1급~6급)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뇌병변장애	공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급~3급)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구 4급~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구 4급~6급)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시각장애	공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관련서식 확대 제공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점자사용이 필요한 자	좋은 눈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구 1급~2급)	관련서식 점자 지원 음성지원컴퓨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구 3급 2호, 4급 2호/점자 필요)	
점자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 응시자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 자 (구 2급~6급)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 [참고 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단,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http://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9 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9년 10월 16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7년 10월 17일 이후

###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우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 시험지 문제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음성지원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1.7배)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 4.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 편의지원 신청서

## 1) 인적사항

응시번호	직렬/직급	성 명	장애등급(유형)	연락처(휴대전화, 집)

## 2) 편의지원 내용

[참고 1]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3)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여부

구 분	의사진단서 제출(첨부)	의사진단서 제출 불필요
제출(첨부)여부		

**보내는 사람**

**[공군 군무원채용 제출서류 재중]**

응시직렬 :

응시계급 :

응시번호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우) 3 2 8 0 0